

# WORLD NEWS

## 해 외 동 향

### 유럽의 무선통신에 관한 표준, DECT

”

무선통신에 관한 유럽 표준이 1992년 7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경험들을 제조업자들에 제공하여 DECT가 지닌 장점을 시험 중에 있다.

”

DECT(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communication ; 디지털 유럽 무선 통신)표준이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nstitute ; 유럽 표준화 기구)에 의해 개발되어 통신망 무선 접근을 위한 전 유럽적 표준이 되었다. DECT는 몇몇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표준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기준치인 반면 또 다른 적용에는 좀 더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다.

DECT표준은 ETSI에 의해 1992년 7월에 완성되었고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들에 DECT의 적용에 이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1880~1900 MHz로 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업무용 무선전화, 가정용, 무선 LAN, 텔레포인트(telepoint), 지역 내에서의 무선, 장래의 PCS (개인 통신 서비스 :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가장 고도의 성장을 보이게 될 적용분야는 업무용 무선전화인데 기존의 PABX(구내 자동교환기)에 무선 기능을 추가시키면 된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전략 정책국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까지 유럽에 있는 5700만대의 구내 자동교환기중 160만대 이상이 이 DECT 표준을 적용 접속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그 비율이 전체 기본 설비의 10%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업무용 무선 전화에 DECT 표준이 처음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장의 중요성 때문인데, 제품은 그것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욕구가 없다면 팔리지 않는다. 무선 PABX는 오늘날 많은 업무 이용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통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시스템의 시험을 통해 어떻게 이들이 입증되었는가를 계속 피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업무용 무선 접속을 할 수 있는 동일 시설을 제공할 만한 대체 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업무용 무선전화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까지 다른 보완 시스템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개인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용도 장래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에 알맞는 시스템의 개발여부에 유용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 여의치는 않다.

### DECT 표준의 범위

DECT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의 목표는 무선전화를 위한 간단하고 엄격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었으나 표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 범위를 전화에서 데이터 통신을 포함한 통신으로 넓힌 것이다. 표준의 개발자들은 DECT 제품은 텔레폰트 같은 다른 이동 통신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GSM이나 ISDN망에도 접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ETSI는 1988년에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표준의 적용범위를 고려, 상이한 접속도 포괄하도록 다른 요소들을 지닌 좀 더 개방된 표준을 정의하게 되었다.

각 제조업자는 그들이 관심 있는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어 이 점이 많은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점이 되었다.

무선 LAN등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표준이 적합하다. LAN은 다른 DECT시스템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다. LAN이란 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무선 LAN기능을 구축할 수가 있다. 무선 자동교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텔레폰트와 같은 것에 적용할 때는 제품의 공존성뿐만 아니라 한 제조업체의 핸드셋(송수화기)을 다른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의 호환성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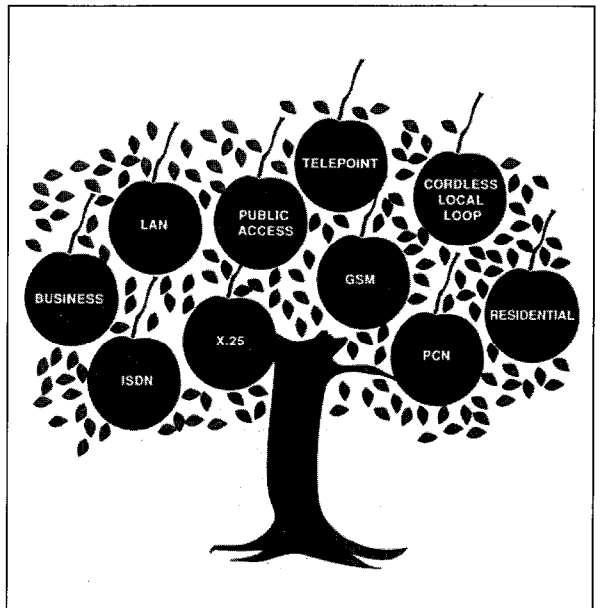
ETSI가 채택한 방법은 단위(모듈러)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 표준은 표준 범위내에서 공존성과 호환성 두가지를 충족시킨다. 여기에는 공중 접속 프로파일(PAP:Public Access Profile)도 포함되는데, 공중접속 프로파일은 텔레폰트 시스템의 경우처럼 공

중 접속을 위해 설계된 모든 DECT장치가 꼭 따라야만 하는 일종의 설계명세서와 같은 것이다. 유사한 PABX와 같이 좀 더 긴밀한 사용자군 적용에서는 공중접속프로필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

### 체리 표준 나무

완성된 DECT표준을 (그림 1)과 같이 체리 나무로 나타내었다.

(그림 1) 나무로 나타낸 DECT표준



사용자는 그들이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인,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나무로부터 딸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제품도 만들 수 있다. 체리 열매는 PSTN, ISDN, GSM, PABXs, X.25 또한 IEEE LAN등 어떤 종류의 망과도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이들은 반대로 DECT표준을 이용해 완성된 많은 종류의 제품 특허 출원도 가능하게 한다.

DECT 표준은 비규제화되어 있는 통신 환경에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텔레폰트를 무선 PBX나 GSM망 등에 연결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구조에도 대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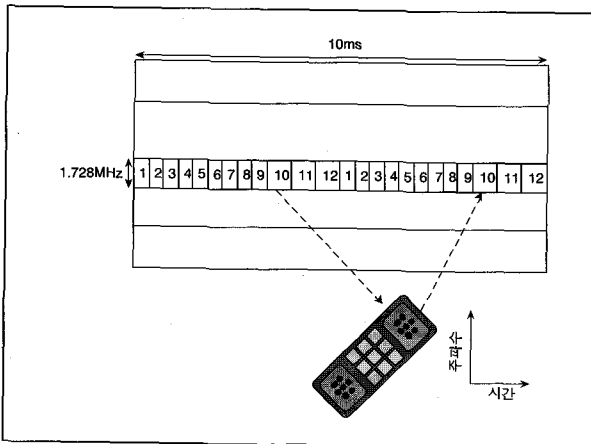
사용자는 DECT공중접속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처럼 그들이 이용하는 망의 종류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DECT의 특징

DECT는 TDMA(시분할 다중 접속)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DECT시스템은 TDMA방식을 통해 중단 없는 통화와 로밍과 같은 많은 이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며 높은 사용자 밀도에도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셀 플래닝과 같은 것이 필요 없다.

TDMA시스템은 이용가능한 밴드 대역폭(약 20 MHz)을 10개의 수송 채널로 쪼개어 이들을 다시 시간 영역에서 24개의 타임슬롯(timeslot)로 나눈다. (그림 2)

(그림 2) TDMA 방식의 예



24개의 타임 슬롯은 12개의 복수 채널 역할을 하는데 각각의 채널중 한개의 타임슬롯은 수신용, 한개의 타임 슬롯은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한 쌍의 시간구조(time frame)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총길이는 10ms이다. 무선전화는 시간의 1/12만 전송하는데 쓰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다. 이 중의 하나가 채널 선택이다.

## 1. 활발한 채널 선택

DECT시스템에서는 채널 선택이 활발한데 통화 통화를 하려고 할때나 통화가 행해지고 있는 두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핸드셋(송수화기)은 자체 셀(무선국)내에서나 복합 셀 시스템 또는 이동한 셀 내의 다른 채널로 더 나은 신호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만약 더 나은 신호를 찾게되면 핸드셋은 무선통제 부분에 구 채널과 병렬로 새로운 채널을 연결하도록 명령하며 그다음 구 채널은 소멸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화도중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통화는 잡음이 있거나 중단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활발한 채널 선택으로 DECT시스템은 광범위하게 간섭에 대해 자율 통제력을 갖춘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양호한 통화를 위해 끊임없이 탐색기능을 갖춘 내부 조직이 간섭을 막게되는 것이다.

시스템내의 핸드셋이거나 시스템 밖에서 만약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강제통화가 발생한다. 핸드셋은 먼저 같은 기지국의 다른 채널로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기지국으로 셀간 통화를 시도한다.

## 2. 높은 사용자 밀도

모든 업무용 응용에 적합하려면, 업무용 무선 전화는 사무실에서 생산현장까지 각 회사가 처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용에서 흔히 나타나는 높은 사용자 밀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DECT는 반경 30~250m의 무선 셀을 갖고 있는 피코 셀룰러 방식을 사용한다. 더 작은 단위의 셀을 사용하면 통화중 빈번한 채널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DECT시스템은 중단없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얼마나 많이 전환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론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셀을 사용하게 되면 셀 플래닝 또한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DECT시스템에서는 TDMA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 플래닝이 필요하지 않다.

통화 채널이 주파수대가 아닌 여러 시간 대로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인접 셀을 피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파수 계획도 필요치 않으므로 용량을 임의대로 증가시키거나 재할당 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관리가 활발한 채널 선택을 하게 되는 휴대용 전화기로 분산되기 때문에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필요도 없다.

### 시스템의 시험

에릭슨, 필립스, 지멘스, 알카텔, 아스콤 등 DECT를 지지하는 업체들이 1989년 상호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DECT표준을 채용한 제품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올리베티와 노키아 등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첫번째 DECT 제품이 올해에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상업용의 DECT 시스템도 운용중에 있지 않지만, 제조업체들은 시스템의 연구와 실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업무용 무선 시스템에 관한 에릭슨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회사의 전화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회사 시설물에 있는 사용자에게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회사들은 그 회사가 있는 장소를 넘어서 가능한 멀리 자동교환망을 확장해 놓고 있지만 몇몇 지역은 그리 간단히 효율적으로 망라될 수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장, 정제소, 전시장, 운송국, 창고 그리고 공항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성질은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몇 경우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유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지역 내 전화선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역작업장이나 창고같은데서는 주요 요원이 움직임이 많고 작업장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에릭슨은 이들 지역에서 즉각적인 쌍방향 통화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용 무선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몇가

지 눈에 띄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속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업무자에게 즉시 연락이 당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문제해결이 지연되면 더 많은 비용지출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과 전시장 등에서는 문제에 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들은 문제에 답하는 시간이 줄어 들면 정책결정 과정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도 낮춰 준다는 것을 알았다. 재정적인 면으로는 네트워크나 생산 라인의 수리, 정비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사나 변동으로 자동 구내 교환기를 재배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결국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업무용 무선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호스트 PABX와 무선 교환기를 연결 시킴으로써 현재의 PABX시스템에 무선으로 구내 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용 무선 전화 설비를 위해 새로운 자동 구내 교환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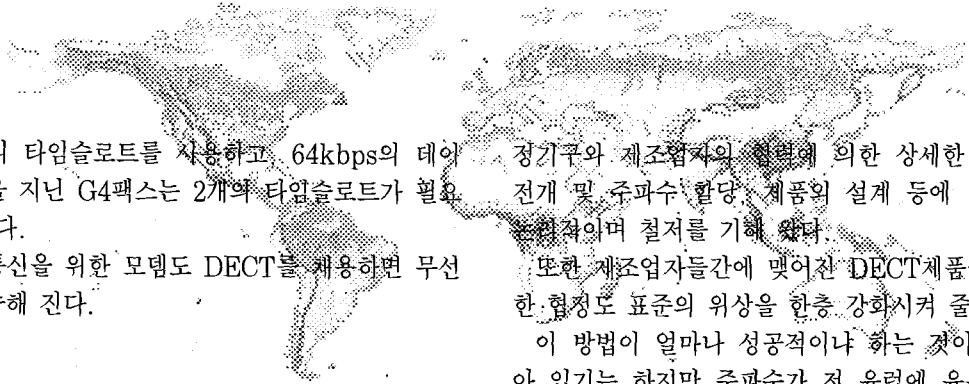
### 데이터 전송

DECT가 접속 방법으로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와도 공중 접속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음성과 자료 전송에 모두 쓰일 수 있다.

DECT 컨셉트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의 하나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 다양하고도 빠른 전송속도를 요구할 경우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타임슬롯트의 수를 증가시키고 속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밴드 대역폭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타임 슬롯트에서 DECT의 기본적인 데이터 속도는 32kbps이지만 타임 슬롯트가 2개, 4개, 8개로 되면 속도는 각각 64, 128, 256kbps가 된다.

DECT는 FAX도 무선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도 용이하게 해준다. G3팩



스는 하나의 타임슬롯을 사용하고, 64kbps의 데이터 처리율을 지닌 G4팩스는 2개의 타임슬롯트가 필요할지 모른다.

컴퓨터 통신을 위한 모뎀도 DECT를 채용하면 무선으로도 가능해진다.

**결론**

DECT표준 개발을 위해 채택한 접근방법은 표준제

정기구와 제조업체의 협력에 의한 상세한 기술사항의 전개 및 주파수 할당, 제품의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며 철저를 기해 왔다.

또한 제조업체들간에 맺어진 DECT제품을 만들기로 한 협정도 표준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 방법이 얼마나 성공적이나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전 유럽에 유용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정책 입안 등 통신기획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신중한 검토를 한다면 DECT를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 GATT의 산물 GATS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 무역의 해외 경쟁을 위한 규정

지구촌 경제라는 특성의 변화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의미해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GATT의 출범 당시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여러 조치에 관한 문제들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현재는 투자 자본, 정보 또는 사람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내 정책이 국가간 경제 협력과 그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특성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질서의 재편이 현 GATT 라운드의 주된 목표가 되었으며 이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제안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부분의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는 한 시장으로부터 다른 시장으로 옮겨지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은 생산되는 즉시 소비되어지며 또한 소비되는 장소도 생산지와 같은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금융 또는 데이터, 방송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해외에 팔고자 한다면 그것을 수요할 소비자를 옮겨야만 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제공 기구나 해외 시장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해외 시장의 설립을 원치 않고, 자국내에 근

거를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엔 이른바 그 시장은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에 바탕을 둔 시장이 된다.

자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나 해외에 업체를 진출시키는 경우 모두, 방송에 있어서는 지역 Cable TV와 같이 국제적인 통신망이나 국내의 통신망을 거쳐야만 소비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GATT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EC의 단일시장 실행 기구나 북미의 자유 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 경제 협력 기구에서도 통신분야가 두드러지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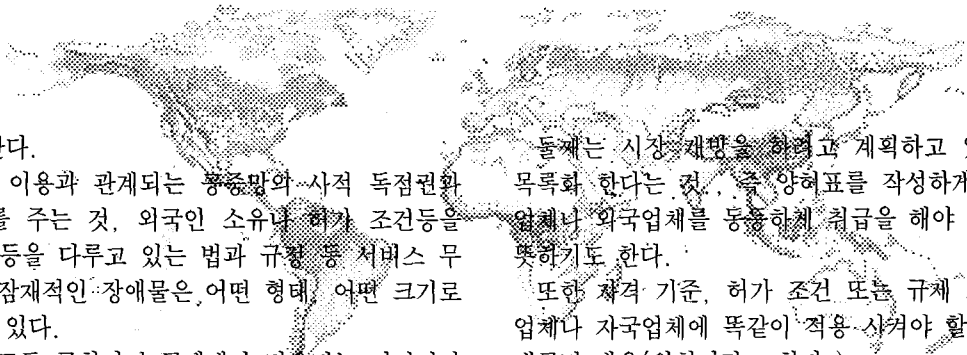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개요

GATT의 서비스 일반 협정의 제안은 국가간 상업적 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협정의 목적은 정부가 국가간 상업적 거래를 관리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공통된 규칙(GATT의 종사자들은 '무역원칙'이라 함)을 세우는 데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2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협정은 국내 규정에 있어 공개주의(투명성)을



칙을 요구한다.

통신망의 이용과 관계되는 방송망의 사적 독점권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 외국인 소유나 허가 조건등을 통한 제한 등을 다루고 있는 법과 규항 등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은 어떤 형태, 어떤 크기로도 나올 수 있다.

그 같은 모든 규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운영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 협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들간 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을 요한다.

이것은 이른바 최혜국대우 또는 MFN원칙이라 부른다. 계약국은 자국내 회사를 더 선호할 수 있겠지만 MFN원칙이란 것은 모든 외국 회사들이 똑같이 대우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한 외국 업체에 특혜를 주게 되면 다른 모든 회사에도 자동적으로 똑 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MFN원칙에 있어서도 약간의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EC회원국들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은 영화와 TV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즉 합작회사에게 주는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까지 이러한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 시장 개방에 대한 양허 사항

모든 서비스를 다루는 규정에 적용되는 공개주의 및 MFN 원칙 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원칙이 몇몇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그것은 각국의 시장 개방 계획(양허표)에 개방 분야를 목록화한 양허협상에 각국이 동의한 분야들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개방 계획에 부가가치통신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도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로써 두 가지 추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첫째는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업체 수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즉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의 수를 제한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독점화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시장 접근권의 제한 철폐'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시장 개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목록화 한다는 것. 즉 양허표를 작성하게 되면 국내 업체나 외국업체를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자격 기준, 허가 조건 또는 규제 조항도 외국 업체나 자국업체에 똑같이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내국민 대우'원칙이라고 한다.)

협정에 있어서 어떤것을 시장 개방 품목(양허표)에 넣을 것인지를 협상하는 이 부분이 주된 협상거리가 될 것이다. 각 국은 어떤 분야를 개방할지 말아야 할 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양허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방송업자나 출판업자 또는 레코드 영화 제작 회사들에 유리한 규정이 문화 분야에서 강한 캐나다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데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통신 서비스 협상

현 우루과이 라운드하에서는 시장개방 대상에 기본 통신 서비스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가 서비스 협정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협정의 주된 의무인 최혜국대우 조약을 자국내 통신 관련 법규에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과 결부되어 있는데, MFN원칙은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호혜주의 원칙을 배제하며 오랜동안 국제 무역 관행의 중심 원칙이 되어 왔다. 이 원칙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몇몇 국가에는 자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 제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미 연방 통신위원회)의 경우는 외국시장에서 경쟁을 위한 동등한 기회가 미국 회사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회사들에게 기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적어도 하나의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개재된 분야라면 이러한 형평성을 시험하여 미국의 통신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규제 환경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근거로 국가간 서비스 규정을 금

지한다면 그로부터 파생할 규제와 정책으로부터 오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내 통신시장의 개방정도에 비추어 미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통신 분야에서의 MFN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 공동체들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업체들의 기본통신시장 개방의 진전을 결부시키고 있다.

### 통신부속서

현 라운드 동안 통신 자유화에 대한 양허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을지라도 제안된 협정은 정부가 통신을 운용해 나가는 데는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통신부속서가 기업체의 공중망 이용 허가 등을 다룬 특정 규범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서의 목적은 기업체가 공중망을 이용 고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적절한 규제 행위의 최소한의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

통신부속서는 이들 회사들이 공개적이고 합당하며 비차별인 조항과 조건하에 어떠한 공동 통신망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부속서는 타당한 접근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안에는 원가 지향 요금 부과, 개인 회선 대여와 기업내 통신을 위한 대여 시설망 운영, 망에 단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해 여기에 특수 조건을 달지도 모른다.

부속서는 여러 면에서 국가 관리 규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자국의 통신 관리 규정중 요금 책정, 독점 표준의 이용, 대여회선의 재판매와 공유 등과 같은 데에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무역 컨셉트와 규칙을 요약하면 정부가 외국 회사들의 상업활동을 규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규칙의 기본적 골격을 만들어 내는 합의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다.

보다 예견하기 쉽고 개방된 국제 상업활동의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이러한 규정의 앞으로 분명히 제정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분야는 더욱 그렇지만 제정된 이런 규정들을 최선의 규제 행동에 최소의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곧 공개적이고 타당한 규정이 되는 것이며,

둘째, 고객 경쟁의 동등한 기회를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즉, 최혜국 대우, MFN 원칙이다.

셋째, 외국회사들에 국내 업체들과 똑같이 대고객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분야의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 ITU와의 중복된 부분은 ?

전통적으로 GATT는 단순히 경제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 경제 및 상업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접근법은 새로운 무역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특히 ITU(국제 전기통신 연합)와 같은 조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GATT는 ITU 또는 다른 정부간 조직의 활동과도 대체될 수도 없고 중복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ITU는 정부가 주파수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또한 기술적인 표준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기술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각 회원국가들의 국가 통신 기반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UNESCO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주로 매스 미디어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협력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UNESCO는 교육, 사회, 문화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어느정도 GATT의 경제 무역 정책의 관심사와 다른 정부간의 조직의 활동들이 중복될 우려도 있으나 그것은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장의 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